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석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1852

발의년월일: 2020년 8월 12일 발 의 자:전석기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봉양순, 고병국, 박기열, 우형찬,

임종국, 이석주, 정진술, 최 선, 김경우, 김태호, 박기재, 장인홍, 양민규, 강동길, 이태성, 김인제, 김 경, 김혜련, 유정희, 임만균,

홍성룡, 노식래, 노승재 의원

(23명)

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로부터 현물출자 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소유권이 이전 된 '공영주차장(도시계획시설)'의 운영(위탁포함)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 공사의 사업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업범위에 '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'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주차장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관리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정함 (안 제2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(사업)제1항제20호를 "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사업"으로 신설하고 현행제20호를 제21호로 한다.

제21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~ 19. 생략
- 20.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사업 (신설)
- 21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(번호변경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. ~ 19. 생략 〈신 설〉	제21조 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. ~ 19. (현행과 같음) 20.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사업 21.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